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
------	----

제출년월일 : 2002.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업종구분이 불분명하여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효율적인 업무처리 곤란 및 2002년 강원도종합감사시 업종적용 불일치에 대한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소지 사전예방

2. 주요골자

가.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1항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

【별표3】을 별첨과 같이 내용신설

- 업무용 : 병영,빈점포,새마을금고(신협포함),농협,수협,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 영업용 : 18. 주점,슈퍼마켓,닭집,제과점 19. 금융업(보험,신용금고,증권사 포함) 20. 전자제품판매 (귀금속판매 포함) 21. 도축장,두부공장,콩나물공장 22. 한의원,침술원,가축병원 23. 창고업,제재소,화원(꽃집) 24. 단란주점,골프장 25. 병원(의원포함) 26. 이.미용업 27.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페인트류제조,블럭시멘트제조업) 28. 제빙업,도축장,염색업,도금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특별한 이의신청사항 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별표3】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 문방구등의 소매점,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시설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시설소화전 ○ 관공서, 학교, 병영, 빈집포, 새마을금고(신협포함),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영업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접객업 2. 공연장(일반대중) 3. 숙박업 4. 유기장, 다방, 노래방 5.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6.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7. 음식점 8. 사설학원 9. 사진현상소 10. 양조업 11.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12.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 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 16. 정육점 17.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설소 18. 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19. 금융업(보험, 신용금고, 증권사 포함) 20. 전자제품판매(귀금속판매 포함) 21. 도축장,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22. 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23. 창고업, 제재소, 화원(꽃집) 24. 단란주점, 골프장 25. 병원(의원포함) 26. 이.미용업 27.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페인트류제조, 불럭시멘트제조업) 28.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금업 	
목탕용	1종	○ 일반목욕장업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업 ○ 목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설소
전용공업용	○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업 종 별	구분내용			업 종 별	구분내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지물,철물(신설) 등의 소매점,부동산중개사무소,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 ○ 고아원,양로원,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원호시설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철물(문방구)등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불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 불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업소 ○ 사설소화전 ○ 관공서,학교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방송국,신문사,정당,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의단체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학교,(별영,민적포,새마을금고(신협포함),농협,수협 <u>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영 업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접객업 2. 공연장일반대중 3. 숙박업(여인숙 제외) 4.유기장,(신설)노래방 5.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6.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또는 관광업 7. 예식장 8. 사설학원 9. 사진현상소 10. 양조업 11.의약품,화공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12.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업제외) 13. 단기급수물 목적으로 일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입주전까지, 운반 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 16. 정육점 17.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설술소 18. ~ 28.(신설) 			영 업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현행과 같음) 4. ---- (다발)--(현행과 같음) 5. - 17(현행과 같음) 18. <u>주점,슈퍼마켓,닭집,계과점</u> 19. <u>금융업(보험,신용금고,증권사 포함)</u> 20. <u>전자제품판매 (귀금속판매 포함)</u> 21. <u>도축장,두부공장,콩나물공장</u> 22. <u>한의원,침술원,가축병원</u> 23. <u>참고업,재계소,화원(꽃집)</u> 24. <u>단란주점,골프장</u> 25. <u>병원(의원포함)</u> 26. <u>의,미용업</u> 27. <u>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페인트류제조,블러시멘트제조업)</u> 28. <u>계벌업,도축장,염색업,도금업</u> 				
특 1 급 용	○ 일반목욕장업			특 1 급 용	○ ----(현행과 같음)				
2 급 용	○ 특수목욕장업 ○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설소			2 급 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전 용 공 업 용	○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전 용 공 업 용	○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서

수 도 법

제23조(공급규정)

일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